

개정 전	개정 후
<p>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u>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원천 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u></p>	<p>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p>
<p>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p>	<p>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p>
	<p>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p> <p>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p>